

※ 번역문은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기존의 한글 서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こちらの翻訳文は民願申請の参考用であり、提出時には既存の韓国語の書式に韓国語でご記入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8. 12. 20.>
■ 輸入食品安全管理特別法施行規則 [別紙第17号書式] <改正2018年12月20日>

영업등록신청서
營業登録申請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3일 3日
신청인 申請人	성명(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氏名(法人の場合は、その代表者の氏名)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の場合は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신청사항 申請事項	명칭(상호) 名称(商号)		영업의 종류 營業の種類	
	소재지 所在地		전화번호 電話番号	
	보관시설의 소재지 保管施設の所在地		영업장 면적 營業場の面積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등록을 신청합니다.

「輸入食品安全管理特別法」第15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6条第1項に基づき、上記の通り營業登録を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地方食品医薬品安全庁長 殿

신청인 제출서류 申請人が 提出する書類	1.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만 해당합니다) 1. 教育履修証(「輸入食品安全管理特別法」第17条第1項本文に基づきあらかじめ教育を受けた場合のみ該当) 2.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保管施設賃借契約書(保管施設を賃借した場合のみ該当) 3.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3. 營業場の施設内訳及び配置図(輸入食品等保管業のみ該当)	수수료 28,000원 (수입인지) 手数料 28,000ウォン (収入印紙)
-------------------------------	--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세창고·보관시설에 대한 「관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신고·허가에 관한 서류(수입식품등 보관업만 해당합니다) 4. 「輸入食品安全管理特別法施行規則」第15条第2項による保税倉庫・保管施設に対する「関税法」・「自由貿易地域の指定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による特許・届出・許可に関する書類（輸入食品等保管業のみ該当） 5.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国有財産法施行規則」第14条第3項による国有財産使用許可書（国有鉄道の停車場施設で輸入食品等の輸入・販売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 6.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都市鉄道法」による都市鉄道運営者と締結した都市鉄道施設使用契約に関する書類（都市鉄道の停車場施設で輸入食品等の輸入・販売業を営もうとする場合のみ該当）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土地利用計画確認書 2. 건축물대장 2. 建築物台帳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法人登記事項証明書（法人の場合のみ該当）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영업등록과 관련된 다음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営業登録をしようとする者は、「輸入食品安全管理特別法施行規則」第16条で定めた事項の他に、当該営業登録に関連する以下の法令に違反又は抵触していないか検討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하천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관광진흥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国土の計画及び利用に関する法律」、 「下水道法」、 「農地法」、 「学校保健法」、 「屋外広告物等の管理と屋外広告産業の振興に関する法律」、 「河川法」、 「漢江水系上水源の水質改善及び住民支援等に関する法律」、 「水環境保全法」、 「騒音・振動管理法」、 「観光振興法」、 「塾の設立・運営及び課外教習に関する法律」、 「青少年保護法」、 「勤労基準法」、 「産業集積の活性化及び工場設立に関する法律」、 「駐車場法」、 「地方税法」等、その他の関連法令
2. 등록된 영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영업을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登録した営業を廃業するときは、営業の廃業申告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처리절차
処理の流れ

